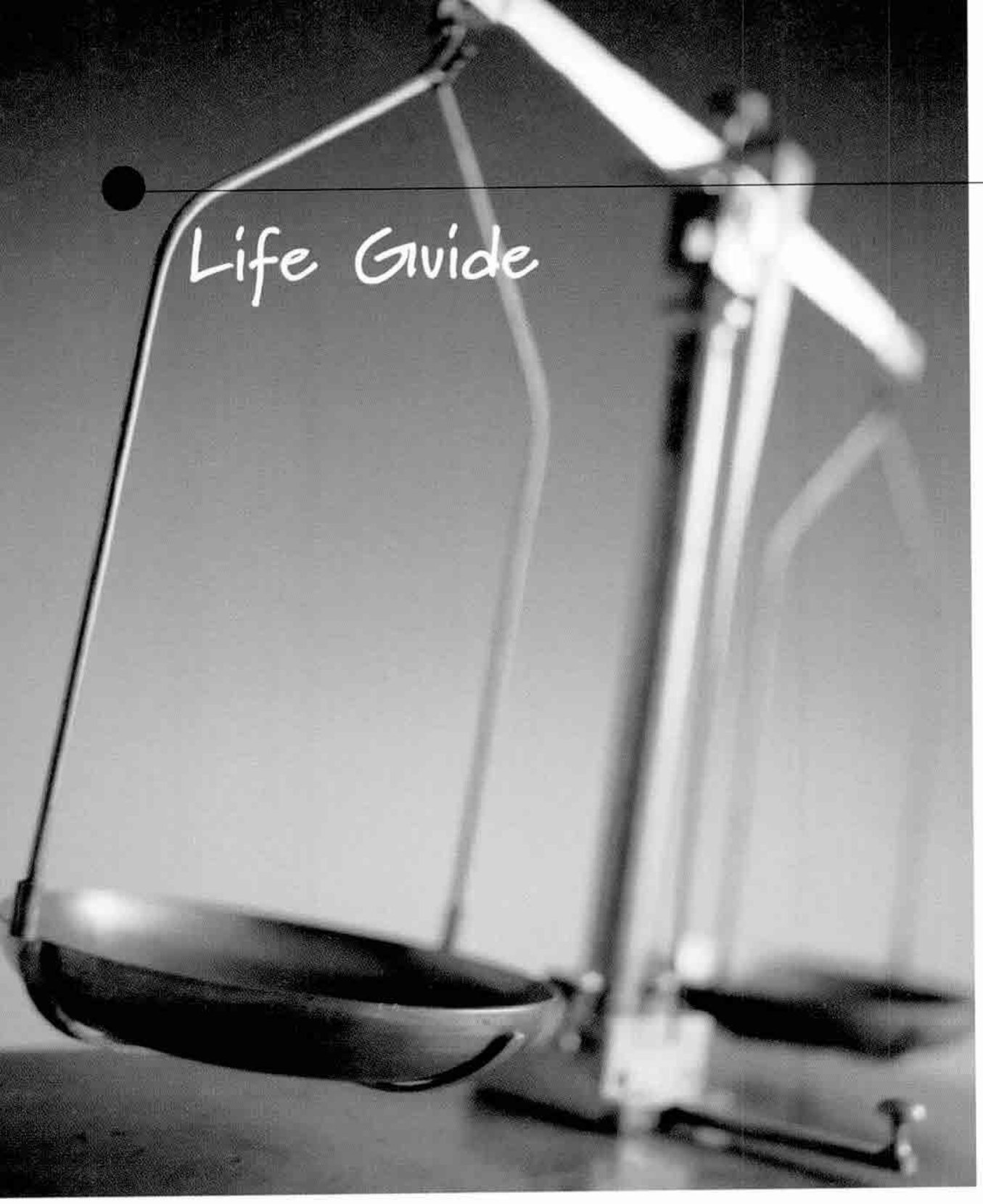

알기 쉬운 생활법률

Q : 임금, 퇴직금이란?

A :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 년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 예컨대 5인 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 3년 = 300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퇴직금산정과 산재시의 임금계산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본봉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체력단련비, 급식비, 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되나,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보험보조금, 축의금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Q : 임금 · 퇴직금의 보호제도

A :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의 1/2 상당액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